

도시계획 결정(변경결정)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74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4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 및 변경결정
2. 입안내용
 - 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지 구 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 초 결정일	비 고		
광진구·성동구	1	기정	동 이 로 역사문화 미관지구	장평교 ~ 성 수동2가	90,120	3,755	양측12	'82. 4.22	- 성동구 편측 3,320m 포함	
		변경	영동대교 북 단	중 심 지 미관지구	영동대교북 단 ~ 노유동 203-5	10,800	450	양측12	'82. 4.22	- 실효 - 성동구 편측 450m포함
	변경	동 이 로	일 반 미관지구	장평교 ~ 영 동대교북단	134,160	5,590	양측12		- 실효구간 포함 - 연장 오차조정	
광진구	2	기정	영동대교 북 단	역사문화 미관지구	영동대교북 단 광장주변	3,600	300	편측12	'78. 11.17	
		변경	영동대교 북 단	일 반 미관지구	영동대교북 단 광장주변 (노유동206 -2 ~ 노유동 161-1)	3,600	300	편측12		
	3	기정	광나룻길	중 심 지 미관지구	왕십리 로터 리 ~ 광진교	225,000	7,500	양측15	'82. 4.22	
		변경	광나룻길	역사문화 미관지구	모진동199- 1 ~ 구의동2 53-1	22,500	750	양측15		
				중 심 지 미관지구	왕십리로터 리 ~ 광진교	202,500	6,750	양측15		준치
	4	신설	구 남 길	일 반 미관지구	구의동 245- 8 ~ 구의동5 46-10	16,800	700	양측12		
	5	신설	강변역길	일 반 미관지구	구의동 700~ 구의동 213 -1	25,680	1,070	양측12		
	6	신설	울 립 픽 대 교 길	일 반 미관지구	구의동 199 -85 ~ 구의 동584	11,760	490	양측12		
	7	신설	광 장 로	일 반 미관지구	구의동 547 -8 ~ 구의동 453-1	36,960	1,540	양측12		

3. 입안사유

- 동이로, 영동대교북단 노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(2000.7.1)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
- 광나룻길 중심지미관지구중 일부 구간은 어린이대공원 경관보호 및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결정
- 구남길, 강변역길, 올림픽대교길, 광장로는 한강변 경관보호와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미관유지·관리를 위하여 일반미관지구로 신규 결정

4. 도시계획사항

- 일반주거지역, 역사문화미관지구

5. 도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-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 없음
-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동의
-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: 의견 없음

6.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

- 일반미관지구 신설지정 구간 등에 대하여는 도로의 폭원(20m 이상)을 고려할 때 이견 없음, 다만 고층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광장로 일부구간(테크노마트~현대프라임 아파트 30층~ 현대 3·5단지 18층)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
- 중심지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광나룻길 일부구간은 주거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으나, 잔여 구간의 중심지미관지구(중전 2종 미관지구)중 주거지역에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검토 필요
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75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0.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(안)

2. 입안내용

- 도시계획 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 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

구 분	위 치	용 도 지 역		면적(m ²)	비 고
		기 정	변 경		
변 경	강서구 등촌동 564-1	일반주거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2,902.3	12층 이하 용적률200%

3. 입안사유

- 본 입안지는 학교시설 용지였으나 학교측에서 동 토지를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여 토지주로부터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에 걸쳐 제기됨에 따라
- 장기민원을 해소코자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제 요청되어 2002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(5.1) 심의결과, 본 토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서
- 위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코자 함.

4. 추진경위

- 2002. 5. 1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(안)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- 심 의 결 과 : 조건부 가결(학교시설 해제는 가결)
- 조 건 사 항 :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 보고(차기회의)
- 2002.5.22 :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 보고(도시계획상임기획단)
 - 내 용 : 제2종 일반주거지역(층수 12층 이하)
- 2002. 8.30 : 구 의회의견청취(원안결정 권고)
- 2002. 9.17 :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(원안가결)
- 2002.10.04 : 도시계획(안) 결정 요청(강서구 → 서울시)

5. 참고사항

- 주민의견청취 결과 : 의견 없음
 - 공 략 기 간 : 2002.7.20 ~ 2002.8.3
- 관련부서 검토의견
 - 도시계획상임기획단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일부해제에 따른 2002년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(5.1)심의결과 가결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(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 일반주거지역)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.
 - 도시계획과
 - 2002년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(5.1) 심의시 해당부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해제되었고,
 - 2002년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(5.22)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세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한 사항이며
 - 우리시 「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(협의대장지 조정기준)」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제2종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하고 있는바, 별도 이견 없음.
- 환경성 검토결과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일부해제 사항으로 현재와 미래의 토지이용 및 환경영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변경예정지 현황 : 1 필지, 2,902.3㎡, 사유지
 - 본 토지는 일부에 가설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나대지로서 동측으로는 등촌로에 접하여 있고, 북측으로는 임광아파트(17층)가 있고 남측으로는 그레이스 아파트(14층)가 건립되어 있음.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고도지구, 공항시설보호지구, 학교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80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5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

2. 입안내용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결정 (신설)	광 장	교통광장	중량구 신내동 278 일대	0	증) 29,519	29,519	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 신설

3. 결정(입안) 사유

- 신내택지지구 개발 및 북부간선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능산길 주변의 교통이 정체되고, 신내IC~퇴계원간 도로확장시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혼잡한 구리IC의 교통량이 신내IC로 분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
- 원활한 교통망 구성 및 주민통행 편의를 위해 현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교통광장으로 결정한 후 능산로 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고자 함.

4. 기 타

- 주민의견 청취 현황
 - 의견청취기간 : 2002. 9. 20 ~ 2002. 10. 4
 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한겨레신문, 한국경제)
 - 접수의견 : 별첨 검토의견서 참조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별도 의견 없음.
- 관련부서 검토의견
 - 도로계획과 : 별도 의견 없음.
 - 도시계획과 : 별첨 검토의견서 참조
 - 중량구 : 별첨 검토의견서 참조
-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, 군사시설보호구역
- 토지 및 건축물 현황
 - 토지 : 95필지 29,519㎡
(사유지 46필지 17,194㎡, 국·공유지 49필지 12,325㎡)
 - 건축물 : 총 25동 2,981㎡(가옥 22동, 공장 3동)
· 유휴가 17동 2,663㎡, 무허가 8동 318㎡
- 재원조달 방안 : 총 13,200백만원(시비 및 국비 각 50%)

공종별	총사업비(백만원)		2002년	2003	장래
	물량	금액			
계		13,200	2,500	5,350	5,350
보상비	토지 46필지 17,194㎡ 건물 25동 2,981㎡	8,200	2,500	5,350	350
공사비	교량 30m 도로 1,870m 기타 1식	5,000	-	-	5,000

- 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: 해당 없음.
- 환경성 검토 : 특이사항 없음.
 - 녹지 일부가 훼손되나 광장부지에 조경 및 녹지조성
- 추진경위
 - '00.12.30 : 북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 개선기본계획 수립
 - '01. 4.17 : 신내IC~구리시계간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
 - '02. 6.11 : 도시계획시설(광장)결정요청(도로계획과→시설계획과)
 - '02. 9.20 : 도시계획(안) 공람공고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81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5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 결정

2. 입안내용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공 원	도 시 자연공원	서대문구 홍제동 322-11	2,087,511.9	증) 1,193	2,088,704.9	고지대 나홀로 아 파트 부지 연결공 원에 편입

3. 입안(변경) 사유

- 2001년도 제2차(2001.4.4)홍제시민아파트부지를 연결된 안산공원에 편입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해발 약 115m 고지대에 건립된 나홀로 공무원 아파트 부지도 안산공원에 편입을 검토하도록 수정가결된 사항으로 이를 편입하여 정비하고자 함.

4. 기 타

- 주민의견 청취 현황
 - 의견청취기간 : 2001.11.17 ~ 2001.11.30
 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한겨레신문, 문화일보)
 - 접수의견 : 2명 4건
 - 전형범 : 충분한보상요구(5천만원), 서대문구 근처로 이주요망, 특별분양가 요구
 - 박남훈 : 보상 및 이주지역에 대한 협의요구
 ⇒ 사업시행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
-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동의(2001.12. 15)
-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원안가결(2001.12.20)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특이사항 없음.
- 관련부서 검토의견
 - 공원녹지과 : 별도의견 없음.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
- 토지현황 : 1필지 1,193m²(지목 : 대, 사유지)
- 재원조달 방안
 - 총사업비 : 2,000백만원(보상비 1,650백만원, 공사비 350백만원)
 - 연차별투자계획 : 2003년 1,650백만원, 2004년 350백만원
- 도시계획수립지침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: 해당 없음.
- 환경성 검토 : 특이사항 없음.
- 추진경위
 - '00.12.21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 요청(구→시)
 - 홍제동 시민아파트 부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
 - '01. 4. 4 : 시 도시계획심의 결과 수정가결
 - 홍제동 공무원아파트 부지도 안산공원에 편입검토

- '01.11.17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(안)공람공고
- '01.11.14 : 구의회 의견청취(원안동의)
- '01.12.17 :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원안가결)
- '02.10. 1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 요청(구→시)

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86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 8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입체구역 특정
2. 입안내용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
가.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폭(m)	연장(m)	면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도시철도	제기동정류장	용두동 및 제기동	18	210	3,600	'72.12.23 (건고시535)	
변경	도시철도	제기동정류장	용두동 및 제기동	18	210	3,600		토지일부 입체구역특정

[철도 입체구역 특정]

구분	입체시설명	입체구역 특정대상	위 치	입체구역 특정				비고
				폭(m)	길이(m)	높이(m)	면적(m ²)	
신설	도시철도	제기동정류장 지하구간	동대문구 제기동 892-72번지 일부	11.2 ~18	54.2	지하 0~30	879.3	지상영구 공작물 설치금지

3. 입안사유

- 본 입체구역특정 대상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되어 지하철1호선 제기동정류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토지로서, 철도청에서는 1982년 인접 토지소유자인 (주)미도파에 지상부분을 매각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지상부분은 미도파백화점 부지로 지하부분은 제기동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음.
- (주)미도파에서 현재 백화점 건물을 대수선 후 증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한 입체구역특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하고 결정 요청하였음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철도청 및 본 시설의 관리자인 지하철공사와 사전 협의 완료되었기 본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기동정류장 부분에 한하여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 결정코자 함.

4. 추진경위

- 02. 7.25 :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(사업자→동대문구)
- 02. 8.10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(동대문구)
- 02. 9.25 :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결정 요청(동대문구→서울시)

5. 공람공고시 제출의견 : 없음.

6.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처리결과

서울시지하철공사

- 제기동정류장 구조물에 영향이 없고 지하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요망
- 사업자가 지하철공사에 이행확약서 제출(02.10.10)

도시계획 결정(변경결정)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10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2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 및 변경결정

2. 입안내용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연 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	
서 대 문 구	1	기정	가좌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(종전4종)	연희동89-12 ~ 홍은동338-146	37,080	1,545	양측12	'82.4.22	
		변경	가좌로 일반미관 지구	연희동89-12 ~ 홍은동338-146	37,080	1,545	양측12	-	
	2	기정	안산순환 도로 (궁동근린 공원내)	역사문화 미관지구 (종전3종)	사천교~연희동 (궁동근린공원내)	48,000	2,000	양측12	'82.4.22
		폐지	안산순환 도로 (궁동근린 공원내)	-	사천교~연희동 (궁동근린공원내)	48,000	2,000	양측12	- 도로폐지 (99.12.17)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m ²)	연 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		
마포구	3	신설	강변북로	역사문화미관지구	성산대교(상암동1537)~상암동시계(상암동1566)	82,800	3,450	양측12	-	
	4	기정	토정길	역사문화미관지구(종전4종)	마포동~합정동	78,432	3,268	양측12	82.4.22	
		변경	토정길	일반미관지구	마포동34~합정동185	78,432	3,268	양측12	-	도로폭원 및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조정
	5	기정	강변북로	역사문화미관지구(종전4종)	현석동114~177간	8,640	360	양측12	82.4.22	
		변경	강변북로	역사문화미관지구	현석동116~150간 현석동164~177간	6,960 1,680	290 70	양측12 양측12	- -	도로폭원 및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조정
	중구·용산구	6	기정	장충단길	역사문화미관지구(종전3종)	한남동~힐탑~광희동	28,800	1,700	양측12	82.4.22
변경		장충단길	역사문화미관지구	한남동~힐탑~광희동	36,000	1700	양측12	-	- 중구구간 편측 400m(종전집단3종) 제외	

3. 입안사유

- 강변북로(마포로~합정동), 안산순환도로, 장충단길은 도로계획 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위치조정
- 강변북로(성산대교~상암동시계)는 한강변의 미관 및 경관을 고려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
- 가좌로, 토정길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(2000.7.1)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지정 (우리시 「미관지구 재정비 방안」 검토 기준상 일반미관지구로 분류)

- 4. 도시계획사항
 - 일반주거지역, 역사문화미관지구
- 5. 도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
 - 주민의견청취 : 의견 없음.
 -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동의
 -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: 의견 없음.
 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: 이견 없음.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10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 . 12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- 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노량진근린공원) 변경결정
- 2. 입안내용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공 원	근린공원	동작구본동산 7-2번지일대	366,110	증)8,850	374,960	- 보라매근린공원 일부 해제 대체부지 지정 : 4,073m ² - 사육신묘지공원 일부 해제 대체부지 지정 : 4,777m ²

- 3. 입안 사유
 - 우리 시 제4차('02.5.1) 및 제7차('02.9.6)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가결된 노량진소방파출소가 위치한 사육신묘지공원 일부 해제(감1,501m²) 및 보라매병원 증축을 위한 보라매근린공원 일부해제(감2,975m²)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
 - 기존 도시계획시설(노량진근린공원)과 연결된 상도터널주변의 잔여지 전체를 공원으로 편입코자 함.
- 4. 추진경위
 - '02.05.01 : 제4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조건부가결)
 - 보라매병원 증축을 위한 보라매근린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와 연계하여 관할 동작구로 하여금 상도터널 상부지역 전체를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절차 이행
 - '02.09.06 : 제7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조건부가결)
 - 노량진소방파출소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사육신묘지공원을 해제하되 대체공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 이행할 것
 - '02.09.13 : 도시계획시설(노량진근린공원)변경결정(일부해제)고시
 - '02.09.19 : 도시계획시설(노량진근린공원)변경결정 공람공고(동작구)
 - '02.10.18 : 동작구의회 의견청취(원안동의)
 - '02.11.22 :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원안가결)
 - '02.11.29 : 도시계획(안) 결정요청(동작구→서울시)

5. 기 타

- 관련부서 검토의견
 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이견 없음.
 - 공원녹지과 : 의견 없음.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
- 토지소유자 : 107필지(시유지:30, 공유지:75, 사유지:2)
 - 국·공유지 : 8,754㎡, - 사유지 : 96㎡

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

의안번호	102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2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, 수도)결정 및 변경결정
2. 입안내용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 (폐지)	공 원	어린이	종로구 구기동 139-10번지	1,681	감) 1,681	0	- 어린이공원은 해체하고 대체공원인 근린공원 신설 - 수도용지는 지하로 근린공원과 중복결정(수도 : 지하 1,533㎡)
결정 (신설)	공 원	근 린	종로구 구기동 139-16번지	0	증) 1,974	1,974	
변경	수 도		종로구 구기동 139-16번지	1,533	0	1,533	

※ 지목은 대지이며 서울특별시 소유임.

3. 입안(변경) 사유

-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지인 동 단지는 외교관 공관단지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하였으나, 현재 동 단지는 공공청사 입주예정지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됨에 따라, 동 어린이공원 부지를 연결된 토지와 함께 남북회담사목국 청사 건립지로 통일부에 배각하기로 결정되어
- 입지가 부적합한 어린이공원은 해체하고, 같은 단지에 수도(배수지)용지를 포함하여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(지목 : 대)를 대체공원으로 지정 하고자 함.

4. 기 타

- 주민의견 청취 현황
 - 의견청취기간 : 2002. 6.13 ~ 2002. 6.13
 - 청취방법 : 2개 일간지(경향신문, 파이낸셜신문)
 - 접수의견 : 없음.
-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(2002. 7.25)
 - 대체공원 연결부지인 구기동 139-17, -18호를 포함하여 공원결정
-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2001.12.20)
 - 대체공원 연결부지인 구기동 139-17, -18호를 포함하여 공원결정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: 별첨 검토의견
- 관련부서 검토의견
 - 공원녹지과, 시설계획과 : 별첨 검토의견

- 상수도사업본부 : 의견 없음.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자연경관지구, 공원, 수도용지
- 토지현황
 - 공원해제 1필지 1,681㎡(지목 : 대, 시유지)
 - 공원편입 1필지 1,974㎡(지목 : 대, 시유지)
- 재원조달 방안 : 전체 시유지임
- 도시계획수립지침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: 해당 없음.
- 환경성 검토 : 특이사항 없음.
- 추진경위
 - '79. 5.21 : 도시계획시설(공원, 수도)결정(서울시고시 제206호)
 -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(외교관공관단지조성)으로 결정
 - '01.11.30 : 남북회담사무국 청사이전 부지매입 협의(통일부→서울시)
 - 매입부지 : 종로구 구기동 139-9, -10, -11, -12
 - 면 적 : 총 4필지 2,130평
 - '01.12.14 : 위 토지 시의회 매각 승인(재산관리과)
 - '02. 2.16 : 시유지 매각관련 대체공원 지정검토(시장방침 제183호)
 - 종로구 구기동 139-16번지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
 - '02. 6.12 :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(안)공람공고
 - '02. 7.25 : 구의회 의견청취
 - '02. 8. 9 :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
 - '02. 8.28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(구→시)

....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 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 중 “복지국”을 “복지여성국”으로 “복지국장”을 “복지여성국장”으로 하고, 제4장제2절 및 제50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건설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1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·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본청의 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·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,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과·담당관 등의 설치)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실장·국장·부장·과장·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본 청

제4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서울특별시의 정책과 기획을 종합·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,